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용산구청
○ 제조사·공급사 : 익스트림 네트웍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행정망 백본 스위치)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31,414,52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 : 용산구청장 (인)

제조사·공급사 : 익스트림 네트웍스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용산구청
○ 제조사·공급사 : 익스트림 네트웍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행정망 백본 스위치)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31,414,52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 : 용산구청 (인)

제조사·공급사 : 익스트림 네트웍스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용산구청
○ 제조사·공급사 : 시큐아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방화벽)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34,640,8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 : 용산구청 (인)

제조사·공급사 : 시큐아이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용산구청
○ 제조사·공급사 : 시큐아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방화벽)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34,640,8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 : 용산구청 (인)

제조사·공급사 : 시큐아이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용산구청
○ 제조사·공급사 : ㈜윈스테크넷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침입방지시스템)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23,477,95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 : 용산구청 (인) **제조사·공급사 : (주)윈스테크넷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용산구청
○ 제조사·공급사 : ㈜윈스테크넷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침입방지시스템)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유지보수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23,477,95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 : 용산구청 (인) **제조사·공급사 : (주)윈스테크넷 (인)**